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가단51974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641,651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41,6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8. 4. 12. D에게 17,000,000원을, 이율 연 20.6%, 연체이율 연 23.6%,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그 약정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D은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21. 3. 31. 기준 잔존 대출 원금은 14,503,861원이고, 미지급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5,361,267원이다.
- 2) E은 2021. 5. 3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E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3) 2021. 8. 5. 기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190,985원이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 1) F는 그 자녀로 G, D, H과 피고를 두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2) F가 2019. 12. 25.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20.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2016. 12. 9.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18. 3. 21.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21. 1. 29. 이들 근저당권에 대한 잔존 피담보채무 7,433,395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D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은 없이 부채만 부담하고 있던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D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시 D의 재정 상태를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D은 형제지간인 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이 때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역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1조합 앞으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가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액 7,433,395원을 변제함으로써 2021. 1. 29.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 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산정하여 보면, 10,641,651원[= 42,566,605원(이 사건 부동산 시가 50,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433,395원) × D의 상속분 1/4,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10,641,651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반환의 대상이 된다.

라. 소결론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641,651원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641,6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2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진주시 / 대 / 145㎡2. 경상남도 진주시 건물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시립트백들조 슬래브자물 단층주택

80.67㎡

